

전화번호이체 및 하나 알리미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전화번호이체 및 하나 알리미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이하 '회원'이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리미 서비스"라 함은 입출금거래 내역 및 금융정보를 은행의 발송시스템에서 회원의 휴대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무선통신단말기 포함.이하 휴대폰)에 실시간 메시지 알림(push)으로 제공하고, 거래내역조회, 전화번호이체, 금융캘린더 등을 포함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용약관에 동의 후 본인인증 등 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손님을 의미합니다.
3.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라 함은 회원명의의 계좌에서 입금이나 출금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을 회원이 지정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실시간 메시지 알림(push)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화번호이체"라 함은 회원이 출금계좌에서 입금 받을 사람의 휴대폰 번호로 이체를 청하고 입금 받을 사람이 본인의 입금정보를 입력하여 자금을 수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입금정보"라 함은 전화번호이체 방식으로 이체한 자금을 수취하기 위해 투입하는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말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만 14 세 이상 손님이 지정한 휴대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가입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은행이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이용)

본 서비스는 제 3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성립 된 이후 회원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등 은행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구성)

본 서비스는 회원이 신청한 계좌에서 발생한 입출금 거래내역 통지, 거래내역조회, 전화번호이체, 금융캘린더와 금융정보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중단)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기로 합니다. 해당 사유발생 시 회원이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제 7 조 (서비스의 해지 및 정지)

- ① 전자금융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② 전화번호이체 및 하나 알리미 서비스만 이용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등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업점에 내점하여 해지신청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회원이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은행 이용을 방해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제13조(회원의 의무)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 ① 은행은 회원이 지정한 휴대폰으로 제5조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1Q Bank 입출금 PUSH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이 1Q Bank 앱에서 "전화번호이체 및 하나 알리미 서비스" 전환신청을 하고 "전화번호이체 및 하나 알리미" 앱 설치절차를 완료하거나 "전화번호이체 및 하나 알리미 서비스" 앱에서 서비스 가입이 완료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1Q Bank 입출금 PUSH 알림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제 9 조 (전화번호이체 서비스)

- ① 전화번호이체 서비스를 통한 이체거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사람은 회원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② 이체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지정된 계좌에서만 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은 이체한 회원이 전송한 알림 메시지의 링크(URL)화면에 입금정보를 투입하여 이체한 자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이체할 때 투입한 받는 분은 반드시 실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받는 분 성명과 받는 사람이 투입한 입금정보에 의해 확인된 예금주가 불일치하면 이체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 ④ 받는 사람이 입금정보를 투입한 시점에 출금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이체신청금액을 초과한 상태일 때 출금됩니다.
- ⑤ 이체신청 후 출금 전까지는 “대기 중” 상태이며 대기 중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체신청 당일 자정까지 입금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이체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⑦ 받는 사람의 계좌가 하나은행 계좌가 아닐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회원은 은행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 객장,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전화번호이체 시 이용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알림 서비스에 대한 이용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서비스 장애 시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보안으로 고객정보를 성실히 보호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제3조에 의한 가입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입력정보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서비스 신청 또는 정보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5. 이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 14 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전화번호이체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및 휴대폰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로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은행이 분실이나 도난통지를 받은 경우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및 휴대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 15 조 (준용규정 및 약관변경)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에 따릅니다.
- ②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이 제2항 및 제3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본 서비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⑦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회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